기성회규약

제1조(목적) 본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강남대학 기성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남대학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사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해 학교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 2.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원조

제5조(운영) 본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은 학장의 요청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1.보통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본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본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 사 약간명
- 4. 감 사 2인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시초의 총회는 학장이 소집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그직무를 대리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 ⑤ 본회의 임원은 학생의 지계존속인 보호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회는 다음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 1. 회장,부회장,이사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임원이 결정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 3. 학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부회장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의의 의결에 있어 2회까지 회의를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에는 출석인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이경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는 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정기회는 각각 당해회의에서 정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및 개폐
- 2. 회장,부회장,이사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과 예산및 결산의 보고

제11조(총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작성과 결정
- 2. 수입,지출 예산의 결정과 승인
- 3. 사업계획의 결정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①회장은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인을 당해학교 직원중에서 학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본회의 회계사무는 본 대학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며 그 집행은 학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본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본대학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재정) ①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당해 감독청이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매년도마다 결정하며,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15조(재산의 귀속) 본회의 사업으로 정성된 일체의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해당학교 설립자에 기부하여 귀속시킨다.

제16조(해산)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완수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해산하고 감독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산한다.

- ② 본회의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부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학교 설립자가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수입,지출 현제표(은행잔고증명서 첨부)
- 2. 재산목록
- 3. 재산처분방법
- 4. 청산위원회의 명부

제17조(청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청산사무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다만,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따로 청산위원회를 구성케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본회의 사업과 수입,지출,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시행일) 이 규약은 197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종래의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한 기성회가 설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3) 이 개정 규약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조회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남대학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총무과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각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본회를 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과 공동체의 성원의식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본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경조금 지급
- 2.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 3.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직원,명예교수,대우교수,학교법인 강남학원 직원으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마치고, 본회의 규정에 의한 1회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탈퇴한 날까지 한다. 단,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② 휴직하는 회원의 자격은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탈회) ① 회원이 본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본교를 퇴직시는 따로 수속함이 없이 탈회가 된다.

제7조(회비) ① 본회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월회비로서 본교의 급여지급일에 공제 징수하되 회비의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1 명

부회장2명

운영위원 10 명 이내 (운영위원과 감사는 교원과 직원을 동수로 한다.)

감 사 2 명

간 사 2 명

제9조(고문) 고문은 본회 제반사업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으로서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회장)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사무를 통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기능) 감사는 본회 운영과 경리사무를 연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간사는 본교 사무행정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간사에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월 일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와 임무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는 회원 1/3이상, 운영위원 2/3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족수 배정기준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다.

(운영위원 배정기준)

구 분	대 학 및 부 서	정 원
대 학	제1대학, 제3대학에서 각2인씩과 제2대학은 3인	7 명
행 정 부 서	기획처, 교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에서 각1인씩과 이외의 부서에 서 2인	7 명
	계	1 4 명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위원2/3 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7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 5. 회비책정
- 6. 기타 주요사항

제18조(의결) ① 총회,운영위원회는 각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갖지 못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차입금
- 3. 보조금(독지가 찬조 및 기부금)
- 4. 기타 수입금

제20조(자산관장) 본회의 자산 일체는 본화 간사(사무행정팀)가 관장한다.

제21조(대여금) 회원의 대여금에 관한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대여금 강제상환) 원리금 상환 이전에 퇴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의사에 불구하고, 본교에서 지급될 일체의 급료에서 우선 공제 환 수한다.

제23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8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준하되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장부와 서류

제26조(장부와 서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공문서보관규정에 의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1. 규정집
- 2. 회원명부
- 3. 임원명부
- 4. 회의록
- 5. 보고서류
- 6. 세입부
- 7. 회비징수부
- 8. 대여금원장

- 9. 현금출납장
- 10. 증빙서류
- 11. 왕복문서철
- 12. 기타 중요한 장부와 서류

- (1) 이 신용조합규약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 제4조 1항의 사항에 발생시는 발생일로부터 전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본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198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1999년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조회규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남대학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부칙 ③에 의하여 규정 시 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입회원서와 1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며,입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3조(월회비)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월회비액은 회원의 매월 교비와 기성회비 본봉의 1.5%로 하고, 매 월급여에서 공제징수한다.

제4조(대여금) 회원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한도내에서 대여금 대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여금 대여신청시 "별표2"의 대여금대여신청서를 3일전에 본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 대여 한도액) ① 대여 한도액을 10,000,000원으로 한다.

② 대여금의 1/2이상 상환시에는 재대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기대여금은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금 금리) 대여금에 대한 금리는 연 10%로 한다. 단, 10원 미만은 절산한다.

제7조(대여금 상환) ① 대여금은 월 10만원씩 균등분할 상환하며, 매월 총 대여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단,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여원금은 30개월로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분할상환하여야 할 상환금액이 5,000원에 미달할 때에는 분할상환한 월에 합산하여 상환 한다.

제8조(경조금 지급)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은 "별표3"의 지급 금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포상) 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년 퇴임하는 회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조사발생 통보) 경조사 발생시에는 운영위원이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수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및 간사에게 매월 일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비 지급) 경조사 발생시에는 회장단에 필요한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1) 본 상조회규정 세칙은 198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미혼 여회원이 퇴직시 그와 동시에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제3차 임원회의 84.10.16에 신설)
- (3)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미혼 회원이 퇴직시 그와 동시에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87년 제1차 이사회 87.8.20에 개정)
- (5)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와 경조금 지급 기준표중의 조화 1점은 1989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 (7)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8)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9)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10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8조에 의하여 개정된 경조금지급표와 제5조(대여금 대여한도), 액), 제7조(대여금상환)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1일부터로 한다.
- LI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2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강남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남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관한 사업
- 3. 간행물 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4.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강남대학교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은 모교 학부 및 대학원졸업자, 평생교육원 졸업자
- 2. 준회원은 모교 대학원, 특별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 평생교육원 수료자
- 3. 특별회원은 모교 교직원의 신분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 및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 1.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 2. 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의결권
- 3.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 4.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회의

제8조(회의)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상임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9조(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동문회장 등 임원의 인준
- 2. 사업계획 승인
- 3. 예 · 결산서 승인
-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 승인
- 5.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하는 주요 안건의 의결 또는 승인

제11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총동문회 임원과 학과동문회 이사로 구성하되 각 학과 동문회장은 학과동문회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이사명단을 매년 총동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학과동문회 이사는 이사회 위원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후보자 심의에 있어 현직 회장에게 제척사항이 있을 시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동문회장, 감사의 선출
- 2. 수석부회장 임명 동의
- 3. 예 · 결산 승인
- 4. 회칙 제 · 개정안의 심의
- 5.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 이사 및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 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예산안의 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 4. 기타 관례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상임임원회) 상임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분과이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기능 및 의결 등은 관례에 준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매년 2월 사업계획서를 사무처에 제출하며 사무총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상임부회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되, 그 회의 운영 및 활동내용을 사무처를 통해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획분과위원회 : 본회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업무
- 2. 조직분과위원회 : 본회의 조직강화사업 및 학과, 지부, 지회, 직능별 조직 지원업무
- 3. 장학분과위원회 :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과 운영, 학술연구 등에 관한 업무
- 4. 선교분과위원회 : 모교의 교훈인 경천애인 사상에 입각한 창학이념 구현 업무
- 5. 홍보분과위원회: 본회의 홍보 및 회보, 동문록 발간 등에 관한 업무
- 6.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본회의 문화, 체육, 예술 등에 관한 업무
- 7. 여성분과위원회 : 본회의 여성동문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업무

제19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되, 그 회의 운영 및 활동내용을 사무처를 통해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정발전특별위원회 : 본회의 재정확충과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
- 2. 동문취업특별위원회 : 동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 4 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약간 명
- 2. 자문위원 약간 명
- 3. 회장 1명
- 4. 수석부회장 1명
- 5. 감사 2명
- 6. 부회장 50명 이내
- 7. 상임부회장 7명
- 8. 사무총장 1명
- 9.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명
- 10. 분과이사 약간 명
- 11. 분과위원장 7명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또는 장기간 회장으로서의 회무를 관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임회장을 보궐로 선출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회장으로 이사회에서 제청한다.

- 3. 고문은 모교 총장과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기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4.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자문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6. 부회장, 상임부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7. 사무총장은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8. 분과이사 및 분과위원장은 상임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임원의 임무) ①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회무와 관련하여 자문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임원회, 상임임원회 등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 ⑥ 상임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모든 사업과 업무를 관장한다.
- ⑧ 분과이사 및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재정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비
- 2. 기금
- 3. 사업수익금
- 4. 기타

제25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모든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기타 본회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모교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5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5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6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5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6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7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7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8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8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198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1.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통과일에 선출된 임원은 이 개정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